

『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7월 8일

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권 순 형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(안 제8조)

-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공급하는 근거 신설(안 제8조의2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
- 1)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
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- 본 『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 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,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출근거를 명확하게 하고,
 - 용어 정리 및 농업경쟁력 강화 등 농업·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공급하는 근거 신설을 위하여,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